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2018. 5. 23.(수)

보험연구원 황 현 아

목차

- I. 기초서류 준수 의무 및 과징금 부과 기준
- II. 과징금 부과 사례 및 현행 법규의 문제점
- III.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 기준 및 해외 사례
- IV. 개선 방안

I. 기초서류 준수 의무 및 과징금 부과 기준

1. 기초서류의 의미
2. 기초서류 관련 규제 현황
3. 기초서류 “준수 의무”의 의미
4. 과징금 부과 기준
5. 과징금 산출 방식

1. 기초서류의 의의

- 보험업법: 정의규정 X, 종류열거 O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학계 및 보험업계: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서류”로 정의함
- **보험상품은 형태가 있는 다른 상품과 달리 계약의 내용 및 상품운용방침에 의해 상품 자체가 결정됨:**
=> **기초서류의 기재내용 = 보험상품**
- 특히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급부의 내용, 시기 및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예금, 증권 등 다른 금융상품과 구별되며, 상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유형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산출방법서
의의	사업운용의 기본 방침을 기재한 서류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기초율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서류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 보험종목 ▪ 보험목적의 범위 ▪ 점포 ▪ 보험금액, 보험기간 ▪ 보험계약체결절차 ▪ 보험수수료 및 환급 ▪ 약관대출 ▪ 보험계약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계약 무효사유 ▪ 보험회사 면책사유 ▪ 보험회사의 의무 범위 및 시기 ▪ 보험계약자의 의무 불이행시 손실 ▪ 보험계약 해지의 원인과 효과 ▪ (유배당)배당 범위 ▪ (실적연동)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방법 ▪ 예금자보호 등 계약자 권익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금 및 보험료 변경시 그 계산에 관한 사항 ▪ 보증비용 부과시 그 계산에 관한 사항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사업방법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방법 (보험업감독규정 제7-65조~70조)

2. 기초서류 관련 규제 현황

- 2010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상품 자유화***가 시행됨
- 보험상품 관련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함
- 기초서류 준수 의무 및 위반시 과징금 규정도 함께 도입됨

*과거 보험상품 개발 시 감독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보험상품 자율화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초서류 변경시(즉, 보험상품 개발시) 신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제 유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함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전

- 인허가 신청시 기초서류 제출의무(제5조)
- 기초서류 변경시 신고의무(제127조)
- 기초서류에 대한 금감원의 확인(제1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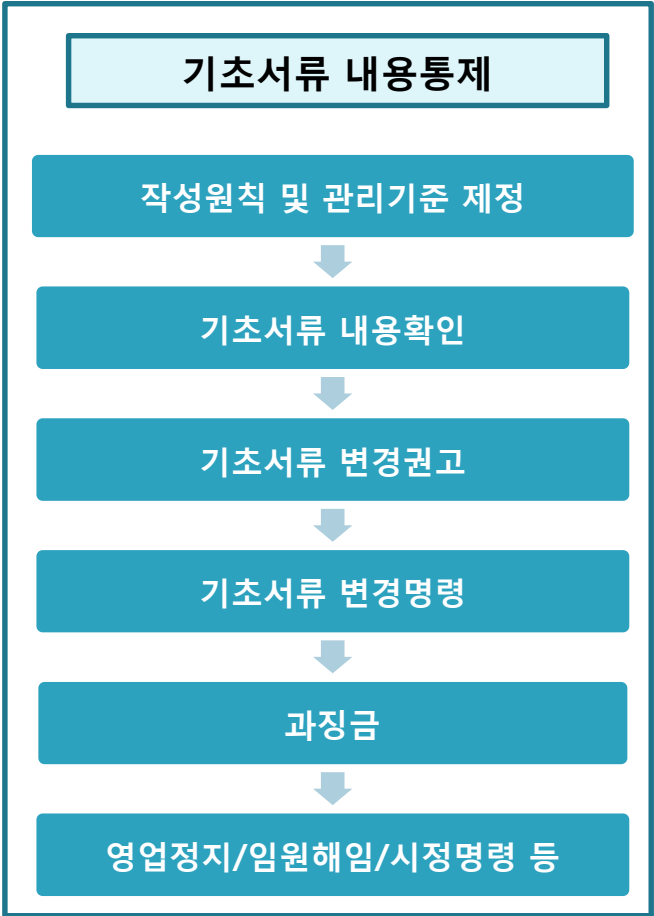
2010년 보험업법 개정 후

- 인허가 신청시 기초서류 제출의무(제5조)
- **(원칙) 기초서류 작성의무(제127조)**
- **(예외) 기초서류 변경시 신고의무(제127조)**
(법령개정에 의한 의무보험 도입, 방카슈랑스 상품)
- 금융위 요청시 기초서류 제출의무(제127조)
- 금융위의 기초서류 변경권고(제127조의2)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제127조의3)**
- 기초서류 관리기준 제정·준수(제128조의2)
-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제128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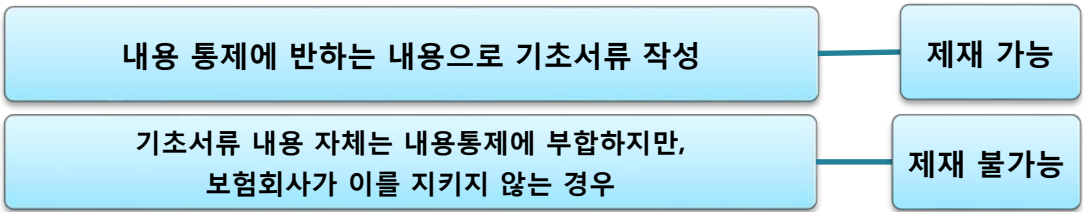
3. 기초서류 “준수의무”의 의의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초서류 내용 관련 규제 = **보험상품 규제**
- 기초서류 내용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를 하더라도, 실제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내용 통제가 무의미해짐
- 기초서류 내용 중 보험업법 규정과 일치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ex 설명의무 위반, 모집 관련 금지사항 위반 등)
 - =>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 가능
- 기초서류 내용 중 보험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ex 상품구성기준 위반, 보험료 비중 위반 등)
 - => 내용통제만으로 상품 규제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



“기초서류 내용통제(상품규제) 효과성 확보”

4. 과징금 부과 기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인 보험업법 제196조 9호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제127조의3 위반: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라고 그 상한을 정하고 있음

해당 보험계약

- 별도 정의 규정X, 기초서류 위반이 문제된 당해 보험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ex) 보험금 미지급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당해 보험계약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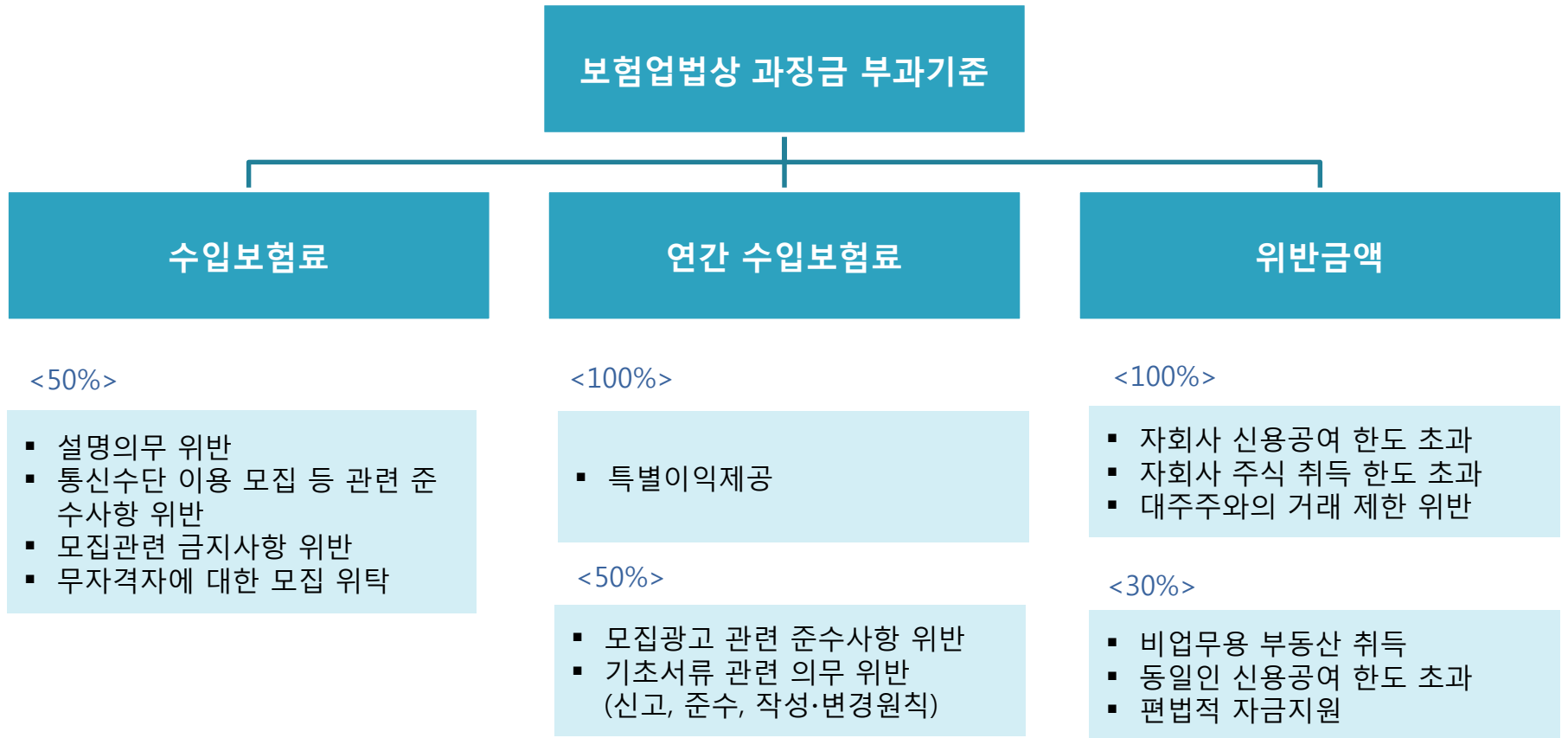
- 보험회사가 당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 일반 회사의 “매출”

“연간” 수입보험료

- 보험회사가 당해 보험계약에 기하여 1년간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 위반이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가장 금액이 높은 때를 기준으로 함

* ‘수입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도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의미함.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순보험료’(사고발생확률과 예정이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보험료), ‘부가보험료’(예정사업비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보험료)가 있음

4. 과징금 부과 기준: 보험업법 위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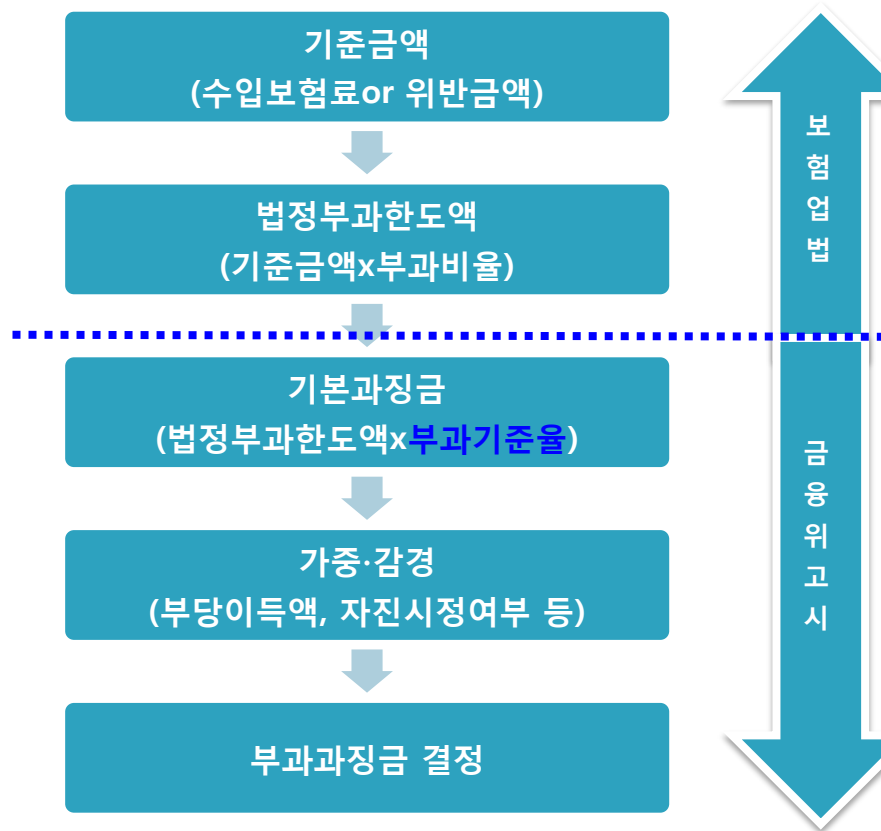


4. 과징금 부과기준: 보험업법 위반(2)

구분		196조	관련조항	행위	법정부과한도액	
					기준금액	부과율
모집 관련 준수 사항 위반	보험 회사	1항 1호	95조의4	모집광고관련 준수사항 위반	해당 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	50%
		1항 2호	98조	특별이익제공금지		100%
		1항 3호	99조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모집인	2항	95조의2	설명의무 위반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50%
			96조①	통신수단이용 모집·철회·해지 관련 금지사항		
			97조①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 관련 금지사항		
자산운용 관련규제 위반	1항 3의2호	105조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	30%	
	1항 4호	106조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초과한 신용공여액	30%	
	1항 5호	106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초과한 신용공여액	100%	
	1항 6호	106조	자회사 발행 주식 등 소유한도 초과	초과 소유한 채권·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100%	
	1항 6의2호	110조	편법적 자금지원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 장부가액	30%	
	1항 7호	111조	대주주와 거래제한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 장부가액	100%	
기초서류 관련의무 위반	1항 8호	127조	기초서류 신고의무 위반	해당 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	50%	
	1항 9호	127조의3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1항 10호	128조의3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위반			
	1항 11호	131조	기초서류 변경명령 등 위반			

5. 과징금 산출방식: 기초서류 과징금 산출 규정

-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적용
-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 이외의 사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과징금부과기준)" 적용



항목	검사 및 제재 규정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
법정부과 한도액	기준금액×부과비율	좌동
	법정부과한도액×부과기준율	좌동
기본 과징금	부과기준율(100%, 75%, 50%) •100%: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5%: 중대한 위반행위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 150%~6.25%* • 150%: 고의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3년 이상 • 6.25%: 과실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3개월 이하
	조정 후 과징금	가중: 부당이득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차액 감경: 특별이익 제공액 100% (또는 특별이익 약속액의 50%) 자발적 시정, 자진신고 등 재발방지조치 이행 공적, 경영실태평가 실적
부과 과징금 결정	▪ 현저히 과중한 경우: 100분의 50 이내 감액 ▪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미부과	좌동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부과기준율(25%~100%)에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조정(25%~150%)을 반영함

5. 과징금 산출방식: 예시

- 2017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됨
-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그 상한액이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되었고, 고시의 "기본부과율"제도도 폐지되어, 기존 대비 과징금 금액 인상이 예상됨

<기초서류 위반 과징금 산출방식 예시(A사 과징금 부과사례)>

<개정 전>

구분	법정부과한도액	구간별 금액	기본부과율	과징금
법정부과 한도액	기준금액(947,774,050,572원)×법정최고부과비율(20/100) = 189,554,810,114원			
구간별 과징금	2억 원 이하	200,000,000원	7/10	140,000,000원
	~20억 원 이하	1,800,000,000원	7/20	630,000,000원
	~200억 원 이하	18,000,000,000원	7/40	3,150,000,000원
	~2000억 원 이하	169,554,810,114원	7/80	14,836,045,885원
기본과징금	(소계)			18,756,045,885원
기본과징금 조정(1차)	[1단계 조정]	.기본과징금의 25% (경미, 과실) = 18,756,045,885×25%		4,689,011,471원
	[2단계 조정]	.1차 조정 후 기본과징금의 25% (3개월 이하)= 4,689,011,471원×25%		1,172,252,868원
기본 과징금 조정 (2차)	가중 여부	.해당사항 없음		
	감경 여부	.감독기관 인지 전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 30% 감경		
조정후 과징금	기본과징금	1,172,252,868원		820,577,008원
	가중금액산정(+)	0원		
	감경금액산정(-)	351,675,860원		
부과과징금결정	해당사항 없음			820,577,008원
과징금산정액	백만원 미만 절사			820,000,000원

<개정 후>

구분	법정부과한도액	부과비율/부과기준율	과징금
법정부과 한도액	기준금액(947,774,050,572원)×법정최고부과비율(50/100)= 473,887,025,286원		
기본과징금	중대성이 약한 위 반행위 & 과실	.법정부과한도액의 25% = 473,887,025,286원×25%	118,471,756,322원
기본과징금 조정(1차)	위반행위 등 기간 및 효과 지속기간	. 기본과징금의 25% (3개월 이하) = 118,471,756,322원×25%	29,617,939,080원
기본 과징금 조정 (2차)	가중 여부	.해당사항 없음	
	감경 여부	.감독기관 인지 전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 30% 감경	
조정후 과징금	기본과징금	29,617,939,080원	
	가중금액산정(+)	0원	
	감경금액산정(-)	8,885,381,724원	
부과과징금 결정	해당사항 없음		20,732,557,356원
과징금산정액	백만원 미만 절사		20,732,000,000원

II. 과징금 부과사례 및 현행법규의 문제점

1. 사례분석
2. 현행법규의 문제점

1. 사례분석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사이트에 게시된 제재 사례 중 2011. 1. 24. ~ 2018. 4. 12.까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 46건을 수집, 분석함
- 46건의 사례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보험금 미지급(19건)

- 19건 중 15건은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사례임
- 나머지 4건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임

보험금 부당삭감(9건)

-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사례임
- (ex)보험금 지급률 임의조정, 지급항목 일부 누락, 정당한 근거 없는 보험금 임의삭감 등

보험료 부당 산출·징수(6건)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보험료를 과다/과소 산출
- 약관에서 정한 징수방법(ex할인을 적용)을 위반하여 과다, 과소 징수

보험계약 부당 해지(4건)

-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험회사가 일방적 계약 해지
- (ex)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해지

상품구성기준 등 위반(7건)

-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상품구성기준 및 보험료 비중 위반
- (ex)기업종합보험은 3가지 이상 보장을 조합해야 하고 및 1가지 보장의 보험료가 95%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

기타

- 옵션매입비용산출방식 위반, 책임준비금 과소 적립, 보장성기준 위반, 공시이율결정 부적정, 갱신보험료 안내절차 위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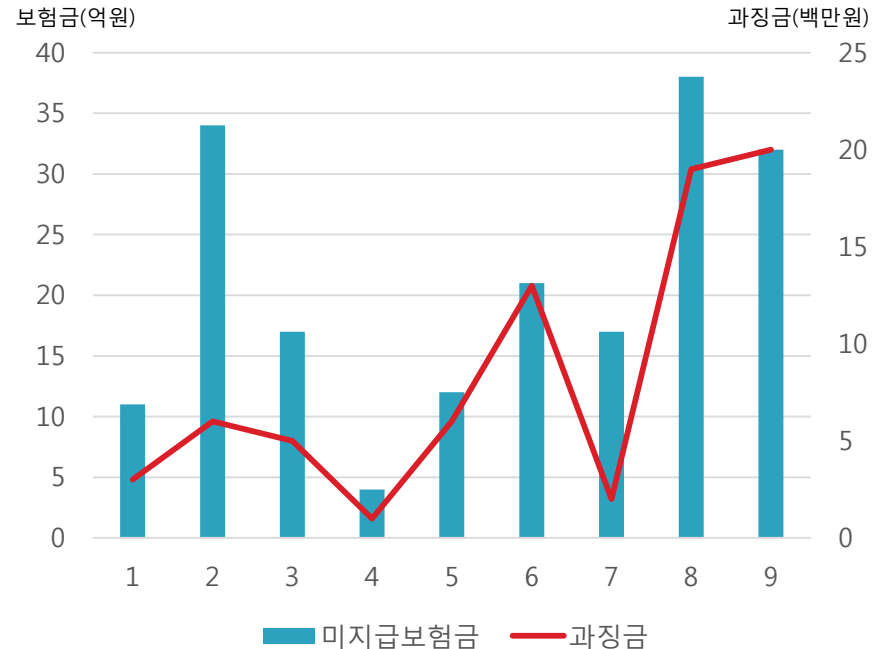
2. 현행법규의 문제점: 보험금 미지급의 경우

문제점(1): 미지급 보험금 금액과 과징금 금액의 불균형(동일유형·동일사유)

-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결과, **미지급 보험금과 과징금 금액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 미지급 보험금 금액이 큰 보험사보다 수입보험료 규모가 큰 보험사가 더 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됨
 -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15건 중 미지급 보험금 원금이 1억원 이상인 사례*를 선정하여 미지급 보험금 원금 규모와 부과된 과징금 금액 규모를 비교하면 이러한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음
- *단, 미지급 보험금 원금이 1억원 이상인 사례 중 과징금 부과사유로 설명의무 위반이 추가된 사례는 제외함

No	제재일자	미지급 보험금(원금)*	과징금 부과금액
1	2016. 11. 23.	10억 9,500만 원	300만 원
2	2016. 11. 23.	34억 2,800만 원	600만 원
3	2016. 11. 23.	17억 7,800만 원	500만 원
4	2016. 11. 23.	4억 9,500만 원	100만 원
5	2016. 11. 23.	12억 1,500만 원	600만 원
6	2017. 10. 19.	21억 8,700만 원	1,300만 원
7	2017. 10. 19.	17억 2,900만 원	200만 원
8	2017. 10. 19.	38억 8,700만 원	1,900만 원
9	2017. 10. 19.	32억 7,200만 원	2,000만 원

*미지급보험금 원금: 1억원 이하 금액 반올림



2. 현행법규의 문제점: 보험금 미지급의 경우

문제점(2): 사망보험금 미지급과 기타보험금 미지급 사이의 불균형(동일유형·상이사유)

- 사망보험금과 같이 보험료 대비 보험금 규모가 큰 경우와 상해, 질병보험금과 같이 보험료 대비 보험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모두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결과, 사망보험금 미지급의 경우가 다른 보험금 미지급의 경우보다 미지급 보험금 규모 대비 과징금 부과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이외의 사유로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례의 경우 미지급 보험금 규모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 비율이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

No	일자	구분	미지급 보험금(원금)	과징금 부과금액	비율(%)*
1	2012. 12. 24.	기타	5,500만 원	600만 원	10.91
2	2014. 8. 27.	재해	432억 2,900만 원*	4,900만 원	0.11
3	2015. 1. 22.	기타	1,700만 원	2,400만 원	141.18
4	2015. 9. 21.	기타	5,000만 원	500만 원	10.00
5	2016. 11. 23.	재해	10억 9,500만 원	300만 원	0.27
6	2016. 11. 23.	재해	34억 2,800만 원	600만 원	0.18
7	2016. 11. 23.	재해	17억 7,800만 원	500만 원	0.28
8	2016. 11. 23.	재해	4억 9,500만 원	100만 원	0.20
9	2016. 11. 23.	재해	12억 1,500만 원	600만 원	0.49
10	2017. 10. 12.	기타	1,800만 원	700만 원	38.89
11	2017. 10. 19.	재해	21억 8,700만 원	1,300만 원	0.59
12	2017. 10. 19.	재해	17억 2,900만 원	200만 원	0.12
13	2017. 10. 19.	재해	38억 8,700만 원	1,900만 원	0.49
14	2017. 10. 19.	재해	32억 7,200만 원	2,000만 원	0.61

*비율=과징금부과금액/미지급보험금(원금)*100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 비율: 0.11%~0.61%

기타사유 보험금 미지급

- 비율: 10%~141%

2. 현행법규의 문제점

문제점(3): 보험금 미지급과 기타 사유의 과징금 규모 불균형(상이유형)

-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해지 등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위반 유형(A)**은 과징금 산정시 전체 보험계약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됨
-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위반 유형(B)**(ex. 보험료 부당산출, 공시이율산출 부적정 등)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관련 보험계약 전체의 연간수입보험료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됨
-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위반 유형(A)의 경우, 그 위반금액 및 부당이득액에 비하여 과징금이 적게 산정되고, 보험사고 발생과 관련이 없는 위반 유형(B)의 경우 그 위반금액 및 부당이득액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됨

[A유형 사례]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 약관 기재사항 위반 :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 의무위반금액(총 미지급금액): 1,025억 원
(2011. 1. 24. 이후): 158억 원(원금 120억 원)
- 연간 수입보험료: [기재 없음]
- 과징금: 3억9,500만 원*

* 금융당국은 위 사례를 "고의"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하였고(부과비율 150%), 기초서류 준수위반에 설명의무 위반까지 과징금 부과사유로 추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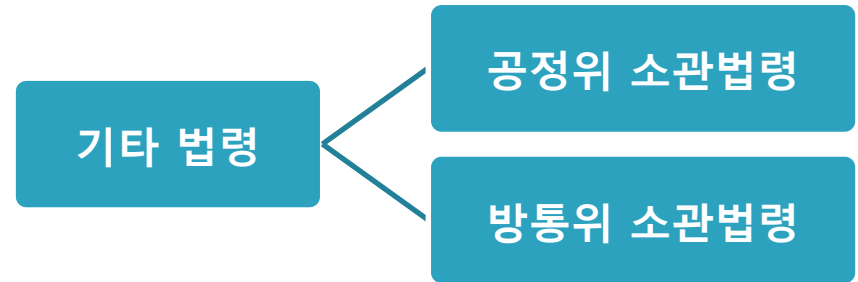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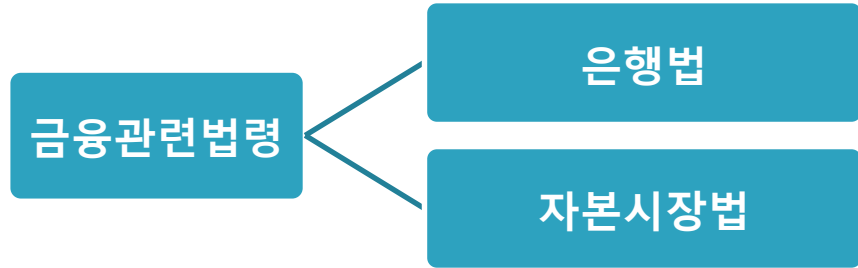
[B유형 사례] 공시이율 결정 부적정

- 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위반: 공시이율 부적정 산출
(기초데이터 산출상 오류로 인해 공시이율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산정됨)
- 의무위반금액: [기재 없음]
- 연간 수입보험료: 1조5,644억 원
(2011. 1. 24. 이후): 9,477억 원
- 과징금: 8억2천만 원
{현행 규정 적용 시: 200억 원(p11 사례 참고)}

III.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및 해외사례

1.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2. 해외사례
3. 시사점

1.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영업행위 및 상품 규제수단: 과징금 X

-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등 **상품 규제**를 하고 있으나(은행법 52조, 자본시장법 56조), 약관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음**
- **불공정 영업행위,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은행법 34조의2, 52조의2, 자본시장법 71조, 85조, 98조, 108조)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음

과징금 부과대상 유형화 및구체화

-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법령은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를 **유형화, 구체화** 하고 있음(ex.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제력 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보복조치 등)
-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약관 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 또는 고객에게 불이익한 서비스 제공**” 등 제재 대상인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음

1.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1) 은행법

- 은행법은 건전경영의 유지에 관한 사항 중 “자산운용 방법 및 한도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
- 영업행위 관련 규제 위반(불건전 영업행위, 불공정 영업행위, 광고 관련 규제위반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은 과징금이 아닌 벌금, 과태료 등임

<은행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위반행위 유형	세부유형	기준금액	부과비율(상한)
신용공여 한도위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초과한 신용공여액	100분의 30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위반		
	모은행 신용공여 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지분증권 취득한도 위반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한도 위반	초과취득 지분증권 장부가액 합계액	100분의100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초과소유 지분증권 장부가액 합계액	100분의 30
자은행 등과의 거래관련 금지행위 위반	자회사 지분증권 담보 신용공여	해당 신용공여액	100분의5
	모은행 등 주식 소유	소유한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	100분의5
	모자은행 상호간 적정한 담보 없는 신용공여	해당 신용공여액	100분의 30
	모자은행 상호간 불량자산 거래	해당 불량자산의 장부가액	100분의 30
금지업무 위반	투자한도 초과	초과투자액	100분의 30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30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 초과	초과소유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30
	은행 주식 담보대출	대출금액	100분의5
	은행주식 취득 목적 대출	대출금액	100분의5
외국은행의 국내자산보유 의무 위반		위반금액	100분의5
대주주의 다른 회사 출자 지원을 위한 신용공여 등		신용공여액/자산장부가액	100분의100

1.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2)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i)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ii)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iii)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구분됨
- (i)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
- (ii)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공시서류 관련 증권의 총 거래가액(**모집가액, 공개매수예정총액, 일 평균 거래금액, 시가 총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20억 원(5% 보고는 5억원)을 상한으로 함
-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5억(이익의 1.5배가 5억 초과시, 그 이익의 1.5배)** 한도에서 부과됨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위반행위 유형	세부유형	기준금액	부과비율 (상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대주주 발행 증권 소유	취득금액	100분의100
	특수관계인 발행 주식 등 소유	허용비율 초과 취득금액	100분의100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100분의100
종금사 특례규정상 거래제한 위반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100분의100
	신용공여 한도위반	신용공여 한도 초과액	100분의40
업무정지처분 부과대상		업무정지기간의 이익 범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위반행위 유형 (허위기재대상)	세부유형	기준금액	부과비율 (상한)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증권신고서상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100분의3 (20억 원 이하)
	미제출		
공개매수 신고서	허위기재	공개매수 예정총액	100분의3 (20억 원 이하)
	미제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일일평균 거래금액	100분의10 (20억 원 이하)
	미제출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당해 상장법인 발행주식 시가 총액	10만분의1 (5억 원 이내)
	허위기재		

1.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3)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를 유형화하고 있고, 각 유형에 따라 부과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음
- 기준금액은 **관련매출액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부과비율(2%~10%)**은 보험업법에 비해 낮은 편임
- 공정거래법 외에 공정위 소관 법령*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과징금 부과 법정 상한액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정하고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의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3조) 등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위반행위 유형	세부유형	기준금액	부과비율 (상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관련매출액	100분의3	10억원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위반금액	100분의10	-
	상호출자	주식취득가액	100분의10	-
	순환출자	채무보증액	100분의10	-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매출액	100분의10	20억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5억원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관련매출액	100분의10	20억원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제외)	관련매출액	100분의5	10억원
	재판매가격유지	관련매출액	100분의2	5억원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매출액	100분의2	5억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매출액	100분의5	20억원
	보복조치	관련매출액	100분의5	20억원
		관련매출액	100분의2	5억원

1.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4) 전기통신사업법 등

- 전기통신사업법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음
- 기타 관련 법령(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들도,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금지행위를 법령에서 열거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단말기유통개선행법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p><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 등 제공 관련) 불합리한 제한 및 차별 등, 협정체결 거부·불이행, 다른 사업자 정보의 부당 유용 ▪ 비용 및 수익 부당 분류에 기한 대가산정 ▪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또는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행위 ▪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부실·허위고지 ▪ 설비 등 제공 대가 부당 결정·유지 <p><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영업보고서 허위 기재 ▪ 회계장부 기재 및 관리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의 동의 없는 민감정보 수집 ▪ 개인정보 이용 제한 위반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위탁 처리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 위반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14세 미만자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국외 제공 	<p><이동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차별지급 ▪ 지원금 상한액 초과 또는 공시기준과 다른 지원금 지급 ▪ 지원금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등 개별계약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관련 오인 유발행위 ▪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점 선임 승낙 거부 ▪ 공정한 유통환경 저해행위 <p><이동통신 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차별지급 ▪ 대리점의 공시지원금 추가지원 관련 한도 위반 ▪ 지원금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등 개별계약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관련 오인 유발행위
과징금 부과기준	<p>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 원)</p>	<p>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매출액이 없는 경우 4억 원)</p>	<p>관련 매출액 100분의 3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 원)</p>

2. 해외사례: 일본 및 미국

- 외국의 경우 제재 대상 자체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제한하거나 구체화 하고 있음
- 보험업 관련 법규상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채택한 경우도 있고(미국, civil money penalty),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일본, 독일)
- 과징금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개별위반행위 1건에 대해 일정액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제재금 규모는 일종의 합의절차인 consent order에 의해서 결정됨

일본

- **[제재대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 위반시 제재
=> “특별히 중요한 사항” 해당 여부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제재수단]** 영업정지 등 영업 및 신분상 제재
(2005년 일본 보험금 미지급사태를 거친 이후에도 과징금을 제재 수단으로 도입하지 않았음)

미국(NAIC 모델법, 뉴욕주보험법)

- **[제재대상]**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 UCSP)와 기타 불공정행위(Unfair Trade Practices, UTP)로 구별
- UCSP: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일반적 영업관행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재 대상이 됨
- UTP: defined violation과 determined violation으로 구별됨
- **[제재수단]** 금전제재 및 영업제재, 신분제재 모두 가능
금전제재 규모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해 결정됨

2. 해외사례: (1) 일본

- 일본 보험업법: 기초서류 정의 규정 X, "기초서류"라는 용어 사용 X
- 기초서류 위반시 제재규정 :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임원해임 또는 면허취소 가능(일본 보험업법 제 133조 제1호)
⇒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은 없으나, 학계에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음
- 일본은 2005년 발생한 일본 보험금 미지급 사태(메이지야스다생명, 후지화재 등 대형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거부, 삭감한 사건)이후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영업정지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으나, 과징금제도는 도입하지 않음(금융상품판매법에서만 과징금제도 도입)

<한·일 기초서류 관련 규제 비교>

항목	일본 보험업법	한국 보험업법
기초서류 작성원칙 준수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준수의무 위반 시 면허 또는 변경 인가신고 불허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초서류 변경시 인가신고	기초서류 변경 시 인가 또는 신고를 거칠 것	기초서류 변경 시 신고 원칙적 불필요
	인가·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예외적)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위반	기초서류 내용 중 "특히 중요한 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임원해임, 면허취소 등 처분 대상이 됨	기초서류 내용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제재

2. 해외사례: (2) 미국-NAIC

- “기초서류”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 Act(UCSPA)를 제정하였음
- UCSPA는 14가지 보험금 지급관련 부당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개별 위반행위(보험계약 1건)에 대하여 1,000달러 이하의 민사제재금(Civil Money Penalty)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 금지되는 행위는 “보험금 미지급” 자체가 아닌, 보험금 지급업무 관련 “불공정 관행”임

<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 유형>

항목	내용
1	고의로 보험금 청구권자나 피보험자에게 문제되는 보상 범위와 관련 사실이나 약관 조항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 하는 경우
2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연락 조치 를 통해 보험금 청구 사실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3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합의 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채택 및 적용하지 않은 경우
4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일응 분명한 상황에서, 선의에 의한 신속, 공정, 공평한 합의절차 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5	소송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보험금 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소송 제기를 강요 하는 경우
6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을 거부 하는 경우
7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조사를 완료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을 하지 않은 경우
8	가입 당시 제시된 서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보험계약자가 기대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합의 를 시도하는 경우
9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 중대한 변경사항에 근거하여 합의를 시도 하는 경우
10	보상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 하는 경우
11	손실에 관한 공식적인 증거자료 및 관련 확인을 요구하며 조사 및 지급을 불합리하게 지연 시키는 경우
12	명확한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하거나 감액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13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양식 및 그 용도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14	정비업체가 적절한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채택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외사례: (2) 미국-NAIC

- UCSPA 적용대상 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Unfair Trade Practices Act(UTPA)가 적용됨
- UTPA는 16가지 행위유형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개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달러 이하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USCPA와 UTA를 수정채택하여 각 주 보험업법에 반영하고 있음

<Unfair Trade Practices 유형>

항목	내용
1	보험약관에 대한 허위의 설명 내지 허위 광고
2	보험회사의 사업 수행에 관한 허위의 정보 제공 및 광고 등
3	보험회사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4	불매운동,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불공정행위
5	허위 공시 및 등기
6	보험모집을 대가로 대리점 주식(agency company stock)을 부여하거나, 기타 이익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7	불공정한 차별
8	리베이트
9	자격 있는 모집종사자를 통하지 않은 단체보험 가입 제안
10	마케팅 및 실적 관련 정보 미제공
11	민원 처리 절차 운영업무 기준 위반
12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가입 청약서에 허위기재를 유도하는 경우
13	금융설계사(financial planner), 투자자문사(investment advisor) 등 용어 사용
14	장기요양보험 판매 관련 정보 미제공
15	보험금 청구 관련 내역 미제공
16	기타 관련 규정 위반

2. 해외사례: (2) 미국-뉴욕주 [보험금 미지급]

- 뉴욕주는 UCSPA와 UTPA를 일부 수정하여 채택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 영업 관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다음 **7가지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 합의 관행(UCSP)에 해당함.
- 보험회사의 행위가 보험계약자 측 이익에 관한 심각한 무시에 해당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대등한 입장에 두고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위반이 인정되면 뉴욕주 금융청장(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Superintendent)은 각 개별 위반행위에 대해 1,000달러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중지 등 기타 제재도 가능함
 - ⇒ 제재금은 개별행위에 적용되므로, 개별 보험계약 1건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구성함
 - ⇒ NAIC모델법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총 제재금 상한을 100,000달러로 정하고 있으나, 뉴욕주 보험법에는 상한 규정이 없음

[뉴욕주 보험법] 보험금 청구 관련 불공정 관행에 해당하는 사유

- 문제되는 보상과 관련된 사실이나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고의로 오해를 유발시키는 경우
-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방법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
-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함에도, **신속, 공정, 적정한 합의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
- 과소한 보험금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수익자에게 소송 제기를 강요하는 경우**
- 뉴욕주 보험법 제3420조 (d)항 및(f)(2)(A)에 따른 **보상범위를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보험금 청구에 대해 금융서비스법 제6조에 의한 **독립적 분쟁해결기구에 분쟁해결신청을 하는 것**

2. 해외사례: (2) 미국-뉴욕주 [불공정관행]

- **[Defined Violation]** 뉴욕주 보험법 §2402(b)에 열거된 보험법상 의무 위반행위
- **[Determined Violation]**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및 관행**으로서, defined violation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405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청장이 그러한 방법, 행위 및 관행에 해당한다고 지정한 것(§2402(c))
- UTP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영업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들이며, 위반 시에는 개별 위반 행위 1건당 1,0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됨

[참고] 미국의 민사 제재금 부과 체계

- 뉴욕 금융청(DFS)의 금융청장(Superintendent)은 뉴욕주 보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민사제재금 부과 외에도 시정·중지명령 부과,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고, 보험법 위반행위는 일반적으로 경죄(misdemeanor)에 해당하나 UCSP나 UT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죄(felon)에 해당하여 무겁게 처벌됨
- 그러나 뉴욕주 보험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제재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consent order 형식에 의한 민사제재금이 부과되고 있음
- consent order는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지 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제재금 상한 및 제재금 부과 절차에 구속 받지 않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제재금 규모 및 시정조치 내용 등을 정할 수 있음
- 제재 대상자는 Consent Order에 의해 합의한 제재금을 DFS에 납부하고 약속한 시정사항 등을 이행함으로써 제재에 갈음하게 됨

IV. 개선방안

1. 개선방안 관련 고려사항
2. 개선방안(1): “기초서류 준수 의무”와 “제재대상”의 구별
3. 개선방안(2): 제재대상행위 유형화 및 구체화
4. 개선방안(3): 제재수단 차별화

1. 개선방안 관련 고려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제는 타당함

- 기초서류는 보험상품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기초서류 작성, 변경, 관리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초서류에 대한 내용 통제가 효력이 없게 됨
- 따라서 “기초서류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 자체는 타당함

“모든” 기초서류 위반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기초서류 기재사항이 다양한 만큼 그 준수의무 위반의 내용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 중에는 상품관련 규제 위반행위도 있지만, 단순한 계약위반(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이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행위, 또는 규제의 필요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행위도 모두 포함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196조는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모든 기초서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규제대상행위 구체화 및 특성에 맞는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행정상 의무 이행을 적절히 확보하는 것이 과징금 부과 목적임
- 그러나 현행 포괄규정 및 과징금 산출방식으로는 이러한 목적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1. 개선방안 관련 고려사항 (2)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 과징금 부과가 부적절한 경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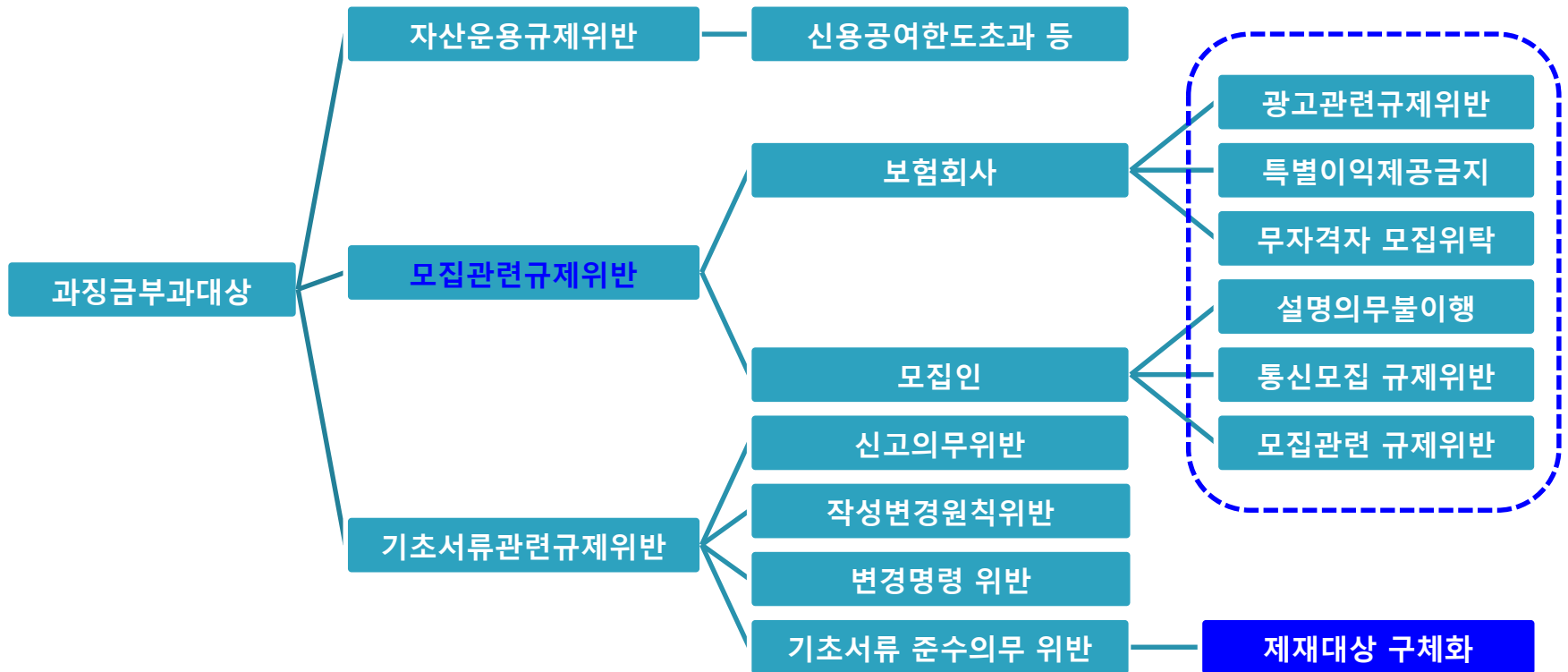
-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적 기능과 위법행위 억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절한 규모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관건임
- “연간 수입보험료”는 공정거래법상 “관련매출액”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나 단말기유통법상 공시지원금 관련 기준 위반 등과 같이 그 위반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정경쟁질서를 어지럽혀 시장(소비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고 이를 통해서 당해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절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보험금 미지급과 같이 **특정 개별 사안과 관련한 규제 위반행위로서 위반금액 및 부당이득 금액 산정이 가능하고, 이러한 위반금액과 매출액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이 과징금 부과에 적절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음**

과징금 수준 인상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

- 2017. 4. 11개 금융관련법령상 과징금 수준을 일괄 상향하였고, 감독당국은 기존 규정 대비 2배~5배 과징금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기준금액 규모에 따라 5배를 초과하는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ex. 사례12: 종전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8억 원이나, 현행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시 200억 원이 됨
- 위법성의 경중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 상한이 인상됨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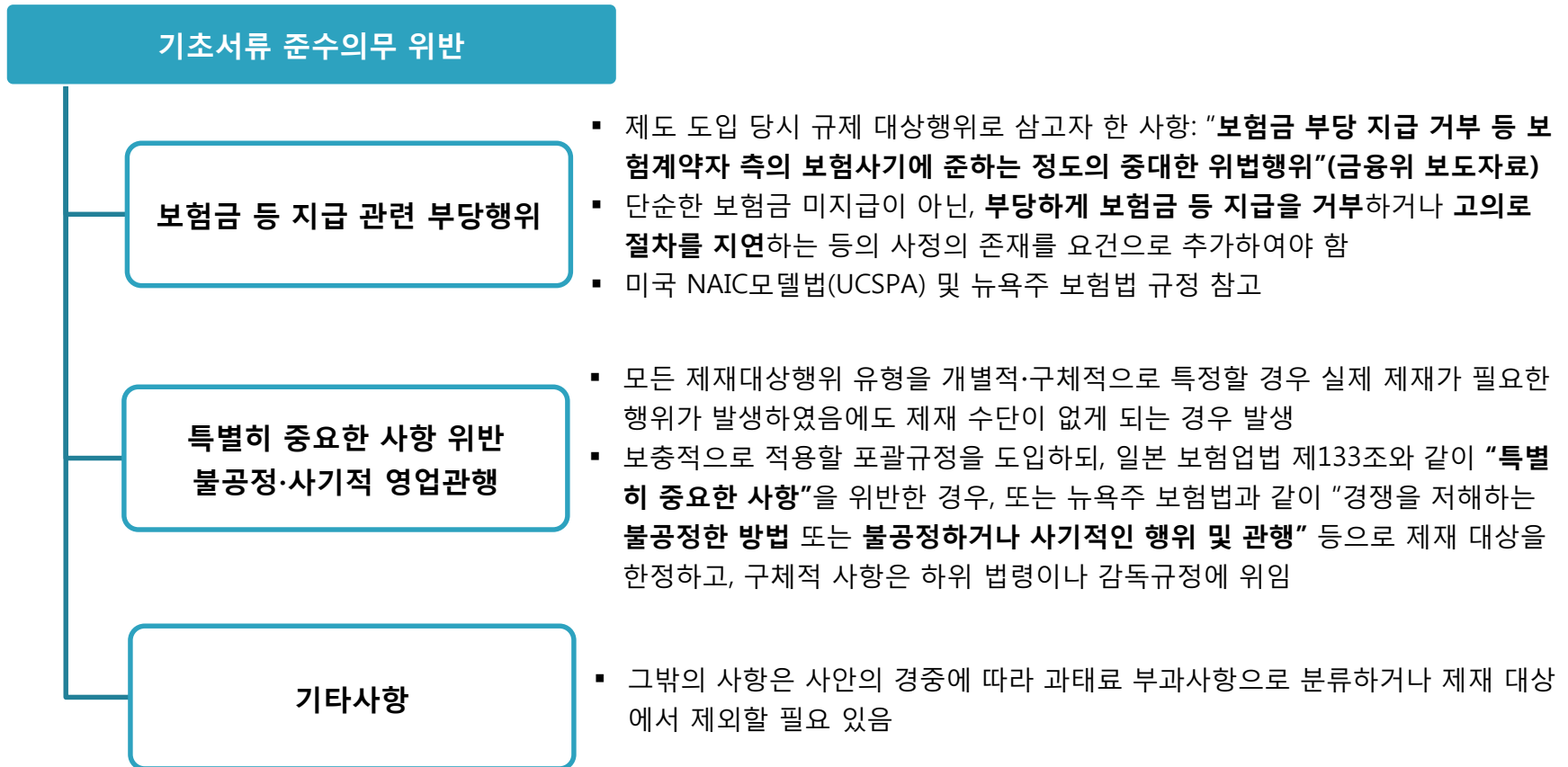
2. 개선방안(1): “기초서류 준수 의무”와 “제재 대상”의 구별

- 과징금 부과대상행위 중 **모집관련 규제위반행위**는 대부분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도 해당하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징금 부과 규정을 두고, 사안의 특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이처럼 “기초서류 준수 의무”와 “제재 대상”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고, 기초서류 준수 의무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재 대상행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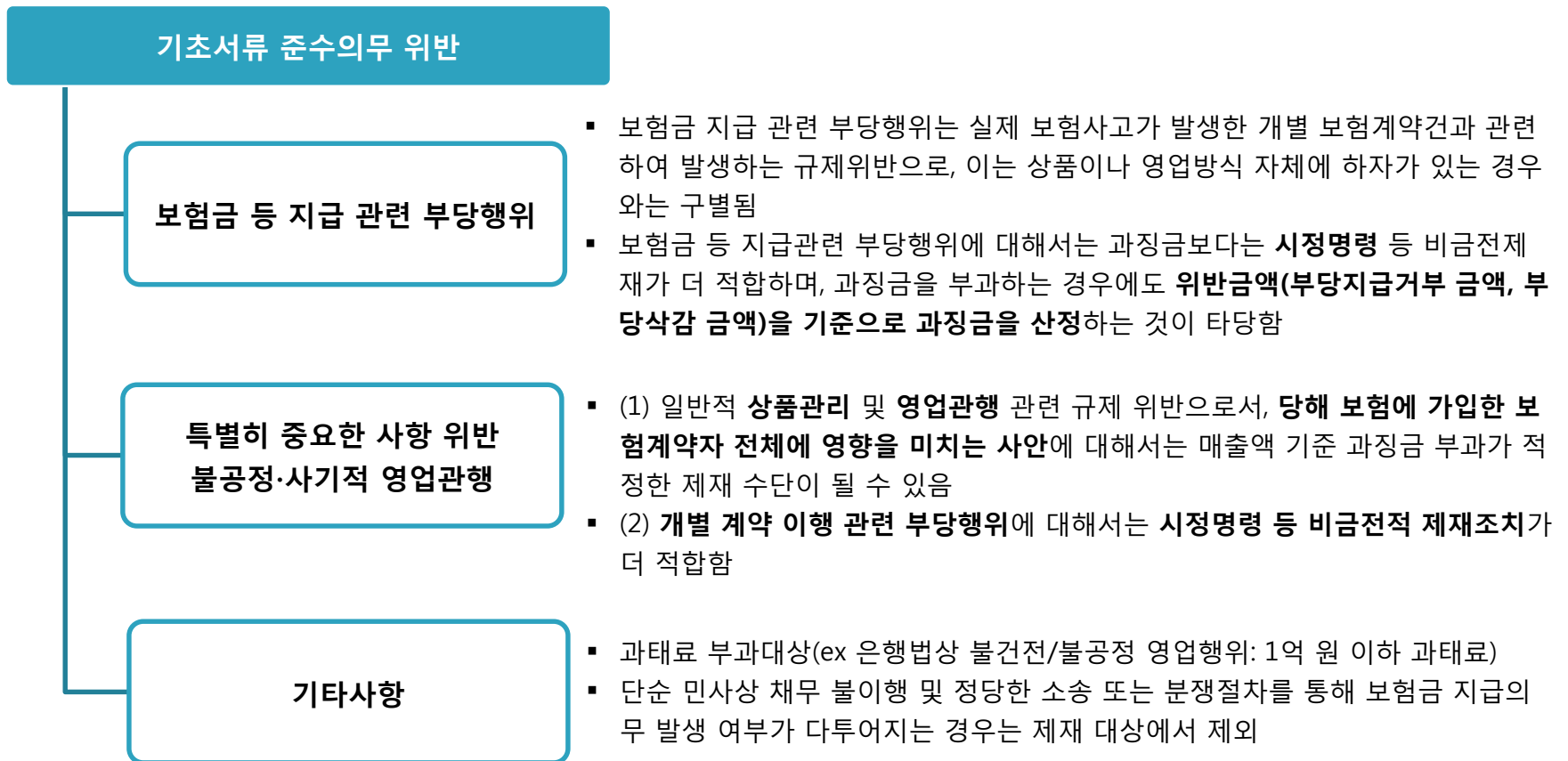
2. 개선방안(2): 제재대상행위 유형화 및 구체화

-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중 실제 **제재가 필요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분류하여야 하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함



2. 개선방안(3): 제재수단의 차별화

- 제재 대상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대상행위 특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달리 할 필요 있음



결어: 과징금 부과대상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재 고찰 필요

보험상품 규제 특수성 및 기초서류 준수 의무 규정의 필요성

- 기초서류 준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은 다른 법령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특수한 규정임
보험산업 및 보험상품이 다른 금융산업 및 금융상품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그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한 점, 보험상품 자유화로 사전규제가 철폐됨에 따라 사후규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다소 특수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임

고액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명확성 결어

- 그러나 “기초서류 준수 의무” 규정을 통해서 **기초서류 위반**을 곧바로 **보험업법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이를 근거로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명확성 원칙에 위반됨
법 규범은 그 자체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 명시하여야 하고, 개별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상적으로라도 행위유형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금지되는 행위를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기초서류” 내용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규범으로서의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행위경중에 부합하는 과징금 산출을 통한 비례원칙 준수 필요성

- 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이 인상되고 기본부과율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행위 경중에 부합하지 않는 고액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문제되는 사례 발생 가능

기초서류 관련 규정이 규범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실제 위반행위의 경중에 부합하는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i) 기초서류 준수 의무와 과징금 부과대상의 분리, (ii)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의 유형화 및 구체화, (iii) 행위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과징금 부과기준 적용 등 법 개정이 필요함

감사합니다.